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공공분양주택(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 **공공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13번지 일원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BL**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494세대 (전용면적 59㎡A 314세대, 59㎡B 57세대, 74㎡A 48세대, 84㎡A 75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30(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28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홈페이지(https://gc.lynn.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청약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출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급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인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급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사전청약 당첨자 및 기관추천 확정대상자(당첨예정자) 등은 불가)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임을 인정하며, 후접수분은 무효처리됩니다.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세대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6년)

| 공고 | 접수 | | | | 당첨자 발표 | 서류접수 (정당 당첨자) | 계약체결 | | |
|-----------|--|--|----------------------|--|----------------------|--|----------------|-------------------------------|-------------------------------|
| | 사전청약당첨자 | | 본청약 신청 포기 | | | | | | |
| 04.30 (목) | 주택형(주택타입) 선호순위선택 | 주택형(주택타입) 배정결과발표 | 05.20(수) 14:00 | 05.21(목) 10:00부터 05.22(금) 17:00까지 (05.21.9만접수가능) | 05.26(화) 10:00~17:00 | 05.27(수) 10:00부터 05.28(목) 17:00까지 (05.27.9만접수가능) | 06.11(목) 10:00 | 06.17(수)~06.21(일) 10:00~17:00 | 07.27(월)~07.30(목) 10:00~16:00 |
| | 05.18(월) 10:00부터 05.19(화) 17:00까지 (05.18.9만접수가능) | 05.21(목) 10:00부터 05.22(금) 17:00까지 (05.21.9만접수가능) | 05.26(화) 10:00~17:00 | 05.27(수) 10:00부터 05.28(목) 17:00까지 (05.27.9만접수가능) | | | | |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공인증서, 내이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사진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발표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권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급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처적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처적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급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앙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신고 전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앙아-다자녀가구-노무보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하여 1주택 기준(거주)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 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블록 | 주택형 (주택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 | | 발코니 |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 | | | | | | | | | 최고 층수 | 1층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 | |
|-----|---------------|-------------|---------|----------|---------|----------|-------------|----------|---------|-------|------|-----------|-------|--------|--------|-------|-------|-------|--------|----------|------|--------|-------|--------------------|
| | | 공급면적 | | 그밖의 공용면적 | | | | 계약 면적(계) | 환장 여부 | 면적(㎡) | 특별공급 | | | | | | | | | | | | | |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 | | | 합계 | 사건 청약 당첨자 | 이 주 자 | 협의 양도인 | 다자녀 가구 | 신혼 세대 | 노무보 양 | | | | 신앙아 | 국가 유공자 | 기관 추천 | 일반공급 |
| | | | | | | | 494 | 362 | 4 | 5 | 12 | 12 | 18 | 6 | 25 | 6 | 12 | 32 | 29 | 15 | 2005 | | | |
| S-1 | 059.9800A 59A | 59.98 | 21.5192 | 8.1006 | 37.4777 | 127.0775 | 확장 | 30.10 | 41.3150 | 314 | 229 | - | 3 | 8 | 18 | 13 | 4 | 16 | 4 | 8 | 21 | 29 | 11 |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통보) |
| | 059.9800B 59B | 59.98 | 21.5192 | 8.1006 | 37.4777 | 127.0775 | 확장 | 31.63 | 41.3150 | 57 | 41 | - | 1 | - | 2 | 2 | - | 4 | 1 | 2 | 4 | 29 | 1 | |
| | 074.9200A 74A | 74.92 | 26.8793 | 10.1183 | 46.8128 | 158.7304 | 확장 | 34.14 | 51.6058 | 48 | 44 | - | - | 2 | - | - | 1 | - | - | 1 | 28 | 2 | | |
| | 084.9900A 84A | 84.99 | 30.4922 | 11.4784 | 53.1049 | 180.0655 | 확장 | 35.32 | 58.5422 | 75 | 48 | 4 | 1 | 2 | 2 | 3 | 2 | 4 | 1 | 2 | 6 | 29 | 1 | |

■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및 납부일정

| 주택형 (주택타입) | 동(라인) | 층별 | 세대 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 | |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 계약시 | | 잔금(30%) | | | | 계약시 | | 잔금(30%) | | | | 용자금제한 잔금 | 용자금 (주택대시금) |
| | | | |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 |
| | | | | | 27,011.11 | 27,051.10 | 27,091.10 | 28,021.10 | 28,071.10 | 28,121.11 | | | | | | | 입주시 | |
| 059.9800A 59A | 101동 (1,3,4,5호) 102동 (2,3,4,5호) 103동(1,2,3호) 104동(3,5호) | 1층 | 11 | 533,710 | 53,4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105,510 | 55,000 | |
| | | 2층 | 13 | 539,390 | 54,000 | 53,900 | 53,900 | 53,900 | 53,900 | 53,900 | 53,900 | 53,900 | 53,900 | 53,900 | 53,900 | 106,990 | 55,000 | |
| | | 3층 | 13 | 550,740 | 55,1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110,640 | 55,000 | | |
| | | 4층 | 13 | 562,100 | 56,3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113,600 | 55,000 | | |
| | | 5층 이상 | 264 | 567,780 | 56,8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115,780 | 55,000 | | |
| 059.9800B 59B | 101동(2호) 104동(4호) | 1층 | 1 | 533,710 | 53,4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53,300 | 105,510 | 55,000 | | |
| | | 2층 | 2 | 539,390 | 54,000 | 53,900 | 53,900 | 53,900 | 53,900 | 53,900 | 53,900 | 53,900 | 53,900 | 53,900 | 106,990 | 55,000 | | |
| | | 3층 | 2 | 550,740 | 55,1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55,000 | 110,640 | 55,000 | | | |
| | | 4층 | 2 | 562,100 | 56,3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56,200 | 113,600 | 55,000 | | | |
| | | 5층 이상 | 50 | 567,780 | 56,8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56,700 | 115,780 | 55,000 | | | |
| 074.9200A 74A | 103동(5호) 104동(2호) | 1층 | 2 | 649,130 | 65,000 | 64,900 | 64,900 | 64,900 | 64,900 | 64,900 | 64,900 | 64,900 | 64,900 | 119,730 | 75,000 | | | |
| | | 2층 | 2 | 656,040 | 65,700 | 65,600 | 65,600 | 65,600 | 65,600 | 65,600 | 65,600 | 65,600 | 65,600 | 121,740 | 75,000 | | | |
| | | 3층 | 2 | 669,850 | 67,000 | 66,900 | 66,900 | 66,900 | 66,900 | 66,900 | 66,900 | 66,900 | 66,900 | 126,450 | 75,000 | | | |
| | | 4층 | 2 | 683,660 | 68,400 | 68,300 | 68,300 | 68,300 | 68,300 | 68,300 | 68,300 | 68,300 | 68,300 | 130,640 | 75,000 | | | |
| | | 5층 이상 | 40 | 690,570 | 69,100 | 69,000 | 69,000 | 69,000 | 69,000 | 69,000 | 69,000 | 69,000 | 69,000 | 132,470 | 75,000 | | | |
| 084.9900A 84A | 102동(1호) 103동(4호) 104동(1호) | 1층 | 1 | 736,390 | 73,700 | 73,600 | 73,600 | 73,600 | 73,600 | 73,600 | 73,600 | 73,600 | 73,600 | 146,090 | 75,000 | | | |
| | | 2층 | 3 | 744,230 | 74,500 | 74,400 | 74,400 | 74,400 | 74,400 | 74,400 | 74,400 | 74,400 | 74,400 | 148,330 | 75,000 | | | |
| | | 3층 | 3 | 759,890 | 76,000 | 75,900 | 75,900 | 75,900 | 75,900 | 75,900 | 75,900 | 75,900 | 75,900 | 153,490 | 75,000 | | | |
| | | 4층 | 3 | 775,560 | 77,600 | 77,500 | 77,500 | 77,500 | 77,500 | 77,500 | 77,500 | 77,500 | 77,500 | 157,960 | 75,000 | | | |
| | | 5층 이상 | 65 | 783,400 | 78,400 | 78,300 | 78,300 | 78,300 | 78,300 | 78,300 | 78,300 | 78,300 | 78,300 | 160,200 | 75,000 | | | |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신청한 분양가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책정된 금액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층)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 <용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정)로부터 주택대시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 하는 주택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본 단지는 전세대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주택형 (주택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 중도금(10%) | | 잔금(80%) | |
|------------|-------|----------|------|-------------|--------|---------|--|
| | | 계 | 계약 시 | 2027.01.11. | 입주지정기간 | | |
| 59A | 6,800 | 680 | 680 | 680 | 5,440 | | |
| 59B | 5,650 | 565 | 565 | 565 | 4,520 | | |
| 74A | 7,730 | 773 | 773 | 773 | 6,184 | | |
| 84A | 6,980 | 698 | 698 | 698 | 5,584 | | |

신청기준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분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 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뉘어 다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잔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개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사전청약 당첨자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당첨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상속의 경우는 제외)
-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5)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26.04.30)까지 주택을 소유(상속의 경우는 제외)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권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고양창릉 입주주택 대상자

■ 신청자격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로부터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고양 창릉 S-1BL)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협의양도인, 철거주택 소유자(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자격

| 구분 | 신청자격 |
|----------|---|
| 협의양도인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의 협의양도인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자 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협의양도인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철거주택 소유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고양 창릉 S-1BL) 공공분양주택의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수도권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사업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는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5.01.~2026.04.30 기간 중 출생자)인 미성년자(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노무보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이)에서 제외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내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공급 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인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